
2026년 위기아동지원사업 안내자료

2026. 01.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 전북아동권리센터



I. 사업개요

가. 사업 배경

- 저소득가정 아동은 질병, 자연재해, 가족구성원의 사망, 소득 중단 등의 위기상황에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워 성장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음. 아동이 위기상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 아동의 위기상황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입이 필요함.

나. 사업 목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나 만성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아동에게 신속하고 실제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을 둘러싼 열악한 환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아동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도움.

다. 사업 내용

1.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나 만성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국내 거주 아동
※ 만 18세인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이면 지원 가능
※ 이주배경아동, 북한이탈주민, 난민가정아동 포함. 단, 의료지원의 경우 치료목적으로 일시 입국한 자는 제외

2. 지원내용

- 생계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지원

3. 지원금액

- 지원항목에 따라 상이, 2개 이상 항목 통합지원 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

4. 지원기준

- 다음의 소득을 총족할 때 대상자로 선정 가능
 - ✓ 법정 저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등
 - ✓ 일반 저소득: 가구원 소득의 합계액이 중위소득 대비 120% 이하 [표 1] 참고

[표 1] 2026년도 기준 소득 및 건강보험료

(단위: 원)

가구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증위 120%	3,078,000	5,040,000	6,431,000	7,794,000	9,069,000	10,268,000	11,419,000
직장가입자	110,969	183,365	232,890	284,951	327,091	374,300	432,308
지역가입자	32,899	123,644	168,649	233,292	284,606	338,641	404,529
혼합가입자	-	185,675	236,378	290,169	337,647	390,974	457,613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증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1,151,000원씩 증가(8인 가구: 12,570,000원)

※ 가구원 범위: 대상 아동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자(동거인, 현역군인, 교도소 수감 중인 자 등은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음)

※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지원 신청일 전월의 산정보험료 기준, 가구원 전체 보험료 합산

5. 지원 항목 및 금액

- 2개 이상 항목 통합지원 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나, 죄종 지원금액은 심사를 통해 결정됨

영역	항목	내용
생계	생계비	- 식료품 및 생필품 구입비, 동절기 난방료 및 방한용품 구입비, 하절기 냉방용품 구입비, 단전/단수의 우려가 있는 연체된 공과금 납부 등 기초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교육	교육비	- 영유아 보육료 및 특기활동비 - 초중고 입학금 및 수업료 미납금, 교복구입 및 기숙사 비용 등 학교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 아동 돌봄 혹은 진로, 진학을 위하여 특별하게 필요한 경우 사교육비
주거	주거환경 개선비	- 누수차단, 노후주택정비, 벽지 및 장판 교체, 욕실 및 화장실 설치, 필수 가전 및 가구 설치, 장애아동 주거환경 개보수, 재해지역 주거복구 등 아동 안전을 위협하는 주거환경 개선 비용
	임시주거비	- 강제퇴거, 자연재해 등으로 거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하숙, 여관, 무보증월세 등 - 3개월 이상 월세가 체납되어 주거 유지가 불가한 경우 월세 체납금
의료	의료비	- 병원 검사 및 치료, 보장구 구입 등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비, 외래비, 약제비 - 단순 예방적 차원의 검사치료, 미용목적의 치료는 제외 - 아동의 유일한 보호자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 의료비 지원
	심리치료비	- 심리검사, 심리상담, 심리치료(놀이치료, 미술치료등) - 아동의 회복을 위해 보호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 지원

6. 지원 적절성 판단 시 고려사항

- 아래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사정해 지원 적절성을 판단, 대상자 선정 심사에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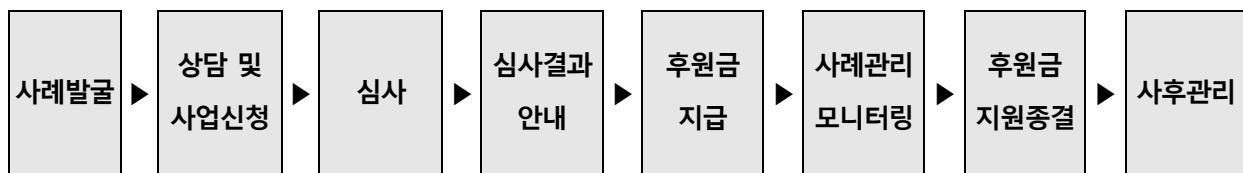
> 아동의 주변 상황

구분	아동의 주변 상황 예시
가족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자녀가정 등 특수한 양육부담이 발생하는 가족유형 - 신체적, 정신적 장애 또는 난치성 질환 등 치료 및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 존재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교육 및 양육 기관을 이용 불가 - 학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지 못해 학업,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상황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에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 존재 혹은 사건 발생 - 폭력상황에의 직·간접적 노출 - 아동안전보호점검표(서식6) 기준으로 아동이 안전하지 못한 상황
아동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정신적 증상에 대한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하나 비용부담으로 인해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 - 증상의 완화 및 회복을 위해 보장구 구입이 필요하나 비용부담으로 인해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
주거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에게 휴식과 안전을 보장해줄 수 없는 거주지 - 월세 체납으로 인한 강제퇴거 위기
기타	- 기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 상황 고려

라. 대상자 선정 시 유의사항

- 동일 가정에 대해 1회 지원 원칙. 지역본부/사례관리기관에서 추가지원 필요하다 판단 시 검토 가능
- 정부지원, 타 기관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마. 지원절차



1. 사례발굴

- 지역사회 협력기관 및 유관기관(공공기관, 학교, 복지관/지역아동센터, 병원 등)에 본 사업 안내, 의뢰 및 접수
- SCK 지역본부 관리 사례 중 본 사업에서 인정한 위기상황 해당 시 지원 가능
- SCK 본부 TM center(VOD) 및 기타 경로를 통한 사례 접수

2. 상담 및 사업신청

- 지역사회 협력기관 통해 사업신청(지역본부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례는 자체 신청 가능)
- 사회복지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VOD 또는 SCK 자체 발굴 사례) 사례관리기관 연계하여 신청

(단, 사례관리기관 연계가 불가능한 경우, 지역본부가 사례관리기관의 역할 수행)

1) 초기상담

- 사례관리기관은 아동 및 보호자와 대면상담 실시
 - 대상자의 경제적 상황, 심리사회적 상황, 현재 처한 위기상황에 대한 정보수집
 - 아동안전보호점검표(서식6)를 통해 아동 안전 확인
- ※ 아동안전보호 위반 사례 발견 시,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안전보호정책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 및 보고 진행

2) 지원신청

- 사례관리기관은 아래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지역본부에 제출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위기아동지원 신청서(서식1)② 아동·가정용 사업참여동의서(서식2), 사례관리기관용 사업참여동의서(서식3)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4)④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여권, 출생등록증, 난민관련 서류 가능) ※ 개인식별고유번호는 삭제 후 제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개인식별고유번호가 노출된 채 제출하였을 경우 제출서류 일괄 반송 처리⑤ 위기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 진단서, 관공서 발급 서류(ex. 사망/실종 신고서, 공과금 미납내역 등), 각종 사진 등⑥ 아동안전보호정책 이행확인서(서식5)⑦ 아동안전보호점검표(서식6)
소득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복지급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상위복지급여 대상자 관련 증명서(아래 서류 중 1개)<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 가족증명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우선 돌봄 증명서✓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감면 대상자 증명서
	일반 저소득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 불가 시: 소득확인 가능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통장내역 확인 가능) 등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영역 지원 시, 주거확인서 제출(전월세계약서, 등기부등본, 무상거주확인서 등) - 사례에 따라 서류 일부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역본부 사례회의를 통해 대체 서류 결정 및 공유 - 기관 통장이 없는 경우 사전 연락, 논의 필수
-------	--

※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로 제출

3. 심사

- 신청서류 일체를 검토하여 본 사업에서 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른 지원 적합성을 판단
- 심사기간은 최대 2주**(신청 받을 때 사례관리기관에 심사 결정 통보 기간 안내)
- 지역본부는 세부 지원 항목 및 지원 금액 결정

4. 심사결과 안내

- 지역본부는 사례관리기관에 지원결과를 이메일 및 유선으로 안내
- 지역본부는 선정사례에 한해 사례관리기관에 사후관리 절차 및 필요서류(통장사본, 결과보고, 아동안전보호 점검, 만족도 조사 등) 안내
- 지원이 확정된 사례관리기관은 대상자에 지원결정내용(지원금액/지원항목/기간 등) 안내

5. 후원금 지급

- 지역본부는 사례관리기관의 계좌로 지원 결정된 금액을 입금(**기관 통장이 없는 경우 사전 연락 필수**)
- 후원금 집행은 최대 3개월, 미디어노출 사례의 후원금 집행은 최대 6개월**
- ※ 의료지원(심리치료 포함), 보육료의 경우 치료기간에 따라 후원금 집행 기간 연장 논의 가능
- 후원금은 사례관리기관에서 직접 지출하며, 아동 및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직접적으로 후원금 입금 불가**
- (단, 스쿨뱅킹 계좌에서 교육비가 지출되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 세이브더칠드런과 논의 후 아동가정 통해 집행 가능)**

6. 사례관리 모니터링

- 사례관리기관은 대상자에 대해 지원 중 사례관리 실시
- 지역본부는 사례관리기관의 사례관리 과정 모니터링
- 가정의 변화, 욕구 재확인, 지원금액 및 사용금액 동일 여부, 추가지원 필요 여부 등 확인
- 아동안전보호점검표(서식6) 재작성을 통해 지원 전 관찰된 아동 안전 위해 상황의 해소 여부 등 점검
- 아동안전보호정책에 위배되는 상황 발견 시,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안전보호정책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 및 보고 진행

7. 후원금 지원종결

- 사례관리기관은 아동 및 보호자와 대면 상담 실시
- 사례관리기관은 대상자의 경제적 상황, 심리사회적 상황, 위기상황 해소 정도, 다른 욕구 발생, 새로운 위기문제 발생 여부 등 확인 후 종결 시기(사후관리 포함) 안내

8. 사후관리

- 지역본부/사례관리기관은 대상자에 대해 후원금 지원 종결 후 최소 2개월 사후관리 실시
- 미디어노출 사례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후원금 지원 종결 후 최소 6개월 사후관리 실시

바. 사업 보고

1. 중간보고 (*별도 요청 시 제출)

구분	제출서류	보고 시기 및 방법
1	서식7. 위기아동지원 결과보고서	결과보고서 양식으로 중간보고서 작성 후 제출
2	서식9. 위기아동지원 영수내역	엑셀파일에 영수내역 취합하여 제출
3	영수증빙서류	영수증 사본 스캔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 후 제출

2. 결과보고: 지원 종료 후 1주 이내 제출

구분	제출서류	보고 시기 및 방법						
1	서식6. 아동안전보호점검표	지원아동 종결 시점에 위험요소가 없는지 재확인 후 제출						
2	서식7. 위기아동지원 결과보고서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후 제출						
3	서식8. 위기아동지원 만족도조사	지원가정 대상 만족도조사 진행 후 제출						
4	서식9. 위기아동지원 영수내역	엑셀파일에 최종 영수내역 취합하여 제출						
5	영수증빙서류 일체	지출결의서, 지출품의서(또는 내부기안) 및 적격증빙 서류 일체 사본 스캔하여 <u>1개의 PDF 파일로 병합</u> 후 제출 <table border="1"><thead><tr><th colspan="2">적격증빙 자료</th></tr></thead><tbody><tr><td>카드결제 시</td><td>- 카드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거래명세서 (카드영수증 내 구매내역 확인 불가 시)</td></tr><tr><td>계좌이체 시</td><td>- 이체확인증(*입출금계좌 모두 확인가능해야 함)</td></tr></tbody></table>	적격증빙 자료		카드결제 시	- 카드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거래명세서 (카드영수증 내 구매내역 확인 불가 시)	계좌이체 시	- 이체확인증(*입출금계좌 모두 확인가능해야 함)
적격증빙 자료								
카드결제 시	- 카드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거래명세서 (카드영수증 내 구매내역 확인 불가 시)							
계좌이체 시	- 이체확인증(*입출금계좌 모두 확인가능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사례관리기관 고유번호로 발급해야 함) - 거래명세서(영수증 내 구매내역 확인 불가 시) - 통장사본(해당 업체) - 사업자등록증(해당 업체) <p>※ 1개 업체 100만원 이상 지출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사례관리기관 고유번호로 발급) - 기타 필요서류 제출
6	지원 사진	지원 사진(물품, 의류 등) 첨부하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

사. 회계처리 및 문서보관

1. 지원금 환급

- 아래 사항 중 1가지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기관에 지원된 후원금 환급

- 가정상황 및 관련 상담 내용이 허위로 판단될 경우
- 후원금을 결정된 내용 외, 다른 목적 및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후원금 사용 과정에 대한 사례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연락두절 등)
- 후원금 전달 이전에 위기 상황이 해소되었을 경우
-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지원 취소를 원하는 경우
- 후원금 사용에 대한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출 하지 않았을 경우
- 그 외 사례관리담당자가 지원 취소 및 후원금 환급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제시할 경우

※ 사례관리기관은 후원금 환급이 결정된 날로부터 2주 이내 지역본부 계좌로 환급액 입금

아. 미디어노출 동의 시 지원규모 및 노출 범위

노출 채널	TV	EBS, 연합뉴스, JTBC와 같은 TV 영상광고 노출
	디지털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 및 기관 SNS 공식 계정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 광고 유튜브 등 영상광고 기타 다양한 모바일 앱 광고
노출 범위	아동	1) 미취학 아동, 대역이 어려운 환아: 실제 아동 촬영 2) 취학 아동, 미디어 노출에 미동의한 미취학 아동은 대역 촬영

	보호자	1) 동의 시, 정면 얼굴까지 촬영 2) 원하실 경우, 정면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각도(뒷모습, 옆모습)만 촬영 3) 미동의 시, 대역 촬영
지원 금액	지원 금액 및 지원 방식은 논의를 통해 결정	

- ※ 미디어 노출 사례는 가정 초기 인터뷰 진행 후 진행 가능 여부 개별 안내
- ※ 실제 아동 노출은 미취학 아동 혹은 아동이 재연 불가능한 상황(ex. 투병, 장애 등)인 경우 동의 하에 진행

【참고】 서식 목록

번호	서식명	제출 시기
[서식 1]	위기아동지원 신청서	사업신청 시
[서식 2]	사업참여동의서(아동가정용)	
[서식 3]	사업참여동의서(사례관리기관용)	
[서식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지원가구용)	
[서식 5]	아동안전보호정책과 이행확인서	
[서식 6]	아동안전보호점검표	사업신청 및 결과보고 시
[서식 7]	위기아동지원 결과보고서	결과보고 시
[서식 8]	위기아동지원 만족도조사	
[서식 9]	위기아동지원 영수내역	
[서식 10]	아동안전보호 소개(아동배포용)	필요 시 기관에서 활용

아. 문의

-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 전북아동권리센터 권유빈(T. 063-288-8526 / E. yubin.kwon@sc.or.kr)